

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
구정질문 내용 처리결과

2004. 02

영등포구 보건소

【 구정질문 】

| 구 분 | 질의 의원 | 질 문 내 용 | 소관부서 |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-|
| 제97회 임시회 | 배기한 |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| 보건위생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사업개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치 : 신길·대림동지역(저소득층 밀집지역) ○ 규모 : 대지 200평, 건물 150평(지하1/지상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지확보후 보건소분소 건립. ○ 보건소분소 근무소요인원 : 8명 ○ 업무기능 : 1차진료, 예방접종, 물리치료, 건강상담, 보건교육 등 □ 그 동안 추진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2.08.01 분소설치 일정 방침 결정(2004년도 개소 목표) ○ 2003.01.17 ~ 08.25 부지물색 및 현장확인(13개소) ○ 2003.03.21 부구청장 주재 현장조사 결과보고 및 검토회의 ○ 2003.03.26 신길1동장동 10개 동장에게 협조공문 발송 ○ 2003.07.18 구청장주재 분소설치 사전검토 회의 개최(4개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축건물 지분매입 방안과 대림1동 청사부지 활용 방안등 검토 ○ 2003.08.04 분소설치 방침 결정(임대) ○ 2003.08.07 예산지원요청(서울시) ○ 2003.08.07 구의회 임시회에서 임대방안 부결 □ 출장 진료사무소 설치에따른 2004년도 예산 200,000천원 편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대료:1억6천만원, 시설비:2천만원, 자산취득비:2천만원 □ 구의회 출장진료소 설치 장소 방안 검토 보고 (총 4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길4동 223-7,8 (2층) ○ 신길6동 4584 외3 (2층) ○ 대림3동 718-1 (4층) ○ 신길5동 445-11 (1층) □ 향후추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소분소설치위원회(안) 구성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장(부구청장)외 구의원 등 10명내·외로 구성 - 부지위치 및 선정, 건축규모 등에 대한 자문 | |

【 구정질문 】

| 구 분 | 질문 의원 | 질 문 내 용 | 소관부서 |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|
| 제101회 정례회 | 김성렬 |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지도, 점검 실태에 대하여 | 보건위생과 | ○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1,591대에 대하여 5월12일~5월30일까지 일제 점검하여 무단폐업 및 표시사항 미부착, 미신고판매기 등 451건을 적출하여 신고유도 269건, 시정완료 182건 조치하였으며, 2004년에도 3/4분기중에 명예감시원 22명을 활용하여 무허가제품 사용행위, 청결상태, 살균기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여 자판기 위생 관리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. | 조 치 완 료 |

【 구정질문 】

| 구분 | 질문의원 | 질문내용 | 소관부서 |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|
| 제101회정례회 | 배기환 | 불법의료행위 단속 미흡 여부 | 의약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4.2.10 현재 대로변을 중심으로 자체 파악한 유사안마업소(스포츠 마사지)는 24개 업소로서 불법광고물 정비부서로 통보(1월:14개소, 2월:10개소)하였으며, ○ 2004.2.12 유사안마업소 명단을 영등포경찰서로 통보하여 단속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. ○ 2004.2.16 현재 유사안마업소 2개업소가 무자격안마행위로 영등포경찰서에 단속된 사실이 있으며, 추후 지속적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. | 조치완료 |

| 처 리 번 호 | 제 목 | 감 사 지 적 사 항 | 구 의 회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| 처 리 부 서 | 조 치 결 과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|-----|
| 행정-3 | 식품자동판매기 (커피등 음료) 위생관리 점검 철저 | 자판기 관리소홀 | 0 식품자동판매기(커피등 음 료)중 옥외에 설치된 자동판 매기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 아 먼지등 위생상 문제점이 많아 특히, 옥외설치된 자판기 실태 점검을 철저히 강구할 것 | 보 건 위 생 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명예감시요원을 활용하여 3/4분기중 일제점검 ○ 신고유도 269건 ○ 시정완료 182건 ○ 중점점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신고, 무허가제품사용행위 - 자판기 청결상태 - 정수기살균기 작동여부 - 준수사항이행여부. | |
| 행정-8 | 보건소청사 청소용역 연간단가 계약 | 연간단가계약 체결날짜가 늦었음 | 2002년도 보건소청사 청소용 역 연간단가계약 기간이 계약 서에 2002.1.1~12.31까지이나 계약날짜가 2002.1.19로 작 성되었음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0 연말에 예산확정후 업체를 선정하여 내부품의, 계약까지 일정이 촉박하여 계약날짜를 2002.01.19일이나 보건소청사 청소는 계속유지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청소를 실시한 1월분을 지출하였음. - 계약담당자 재발방지 교육 실시 | |

【 행정사무감사 】

| 처리 번호 | 제 목 | 감사지적사항 |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| 처리 부서 | 조 치 결 과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|---|----|
| 행정-30 | 지도단속 업무소홀 | 지도단속업무소홀 - 일반음식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, 기타 | o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할것이며, 특히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 및 현장단속이 적시에 이루어 지도록 지도 요망. | 보 건 위생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도단속요원에 대하여 지도 단속요령 및 근무자세등 사전교육 확대실시 (주3회이상 : 연156회) □ 지도단속시 식품명예감시원 (시민단체)입회하에 건전영업계도 및 홍보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명예감시원: 연인원 532명 - 경찰관 : 연인원 143명 - 위생과, 문화체육과, 사회복지과 공무원: 연인원977명 □ 업소 사후관리체계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업소 민·관 합동 감시·단속 -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·불량식품 영화 신고전화 운영(☎1399) -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 - 반사회적 불법영업행위 업소 및 업주 강력 제재 | |

【 행정사무감사 】

| 처리 번호 | 제 목 | 감사지적사항 |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| 처리 부서 | 조 치 결 과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|--|-----|
| 행정-32 | 과태료 관리 미흡 |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저조 ○ 조정: 50,060,000- ○ 징수: 25,260,000- ○ 체납: 24,800,000- ○ 징수율 50.46% | 1. 허가관서에서 체납분에 대해 징수율이 저조한이유 2. 발생과 동시에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, 3.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할 것이며, 4. 업주 면담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5. 무단폐업등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불납 결손 할 것 | 보 건 위생과 | □ 식품위생법 과태료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과년도 체납분 218건 98,800천원중 전국재산조회를 실시 48건 24,400천원을 압류조치하였으며, □ 체납 256개업소에 대하여 독촉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금 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체납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업소를 방문 독려하였으며, □ 무단폐업 및 행불자에 대하여는 현장조사후 결손처분과 신규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음. | |

【 행정사무감사 】

| 처리 번호 | 제 목 | 감사지적사항 |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| 처리 부서 | 조 치 결 과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|---|----|
| 행정-2 | 불법의료행위 에 대한 건 | 보건소에서는 불법의료 행위(스포츠마사지 및 발 마사지)가 자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문제로 야기되기 때 문에 조속한 단속이 이루 어져야 된다고 사료됨 | 불법의료행위(스포츠마 사지 및 발마사지)에 대한 조속한 단속 요구 | 의약과 | 0 조치사항(조치중) - 2003.12.1 유사안마업(스포츠마사지 및 발마사지)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- 파악된 스포츠마사지업소 14개소에 대 하여 2003.12.31까지 자진폐업 또는 전업 하도록 안내공문 발송 - 건설관리과로 14개소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협조요청하여 건설관리과에서 2004.1.24까지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 하도록 계고하였고 추후 철거예정임 - 관할 세무서에 스포츠마사지업소 명단을 통보토록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세법상 통보가 불가하다고 회신 - 2004.01.02 스포츠마사지연합회에서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재판에 회부기로 결정되었으니 판결시까지 단속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 - 2004.01.26 헌법소원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단속을 중지 할 만한 이유가 없어 계속 단속한다고 통보하고 단속 재개 중 | |